

교과과정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과과정위원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학과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가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과에서 하고, 간사를 둔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